



정 선 군

군보는 공문서로의 효력을 갖는다



제207호 2009. 12. 2. (수)

【공 고】

- 정선군공고 제2009-754호 분묘개장공고(2차)..... 1
- 정선군공고 제2009-755호 제1차 정선군 교통안전기본계획 공고.....5
- 정선군공고 제2009-759호 『정선 아리랑 특구』 지정신청에 따른 특구계획안·공청회 및 특화사업자 지정신청 등의 공고.....9
- 정선군공고 제2009-763호 2009년 솔잎혹파리방제(임내정리)사업 공고.....12
- 정선군공고 제2009-764호 정선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안 입법예고..... 14
- 정선군공고 제2009-770호 정선군 소하천구역, 예정지구역 등 지형도면고시(안) 공람공고..... 24

□ 발행 : 정선군청 기획감사실 (전화:560-2223, FAX:560-2592)

정선군공고 제2009-754호

분묘개장공고(2차)

장사등에관한법률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분묘개장 공고 하오니 당해분묘의 설치자나 연고자 또는 관리자는 공고기간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기간내에 신고가 없는 분묘에 대하여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계법령의 절차에 의거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 합니다.

- 아 래 -

1. 분묘의 소재지 및 기수

소 재 지	지 번	지 목	분묘수	비 고
정선군 정선읍 북실리	681-3	대	1	

2. 개장사유 : 군도2호(조동~북실)도로확포장공사 구간 편입

3. 개장방법

- 유연분묘 : 연고자 협의후 개장
- 무연분묘 : 공고기간 경과후 관련법령에 의거 임의개장

4. 이전장소

-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247번지(정선군 하늘터)
- 화장후 납골당 안치

5. 공고기간 : 신문공고 게재일로부터 3개월

6. 신 고 처 :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리 267번지

정선군청 건설도시과(☎ 033-560-2485)

7. 신고요령 : 매장자와 연고자간의 연고권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족보, 묘지신고서 등을 구비하여 상기신고처에 신고.

2009. 11. 23.

위 공고인 : 정 선 군 수

사 진 대 장

분묘의 위치	정선군 정선읍 북실리 681-3번지
사 진 설 명	군도2호(조동~북실)도로확포장공사 무연묘 - 원경



사 진 설 명	군도2호(조동~북실)도로확포장공사 무연묘 - 근경
---------	-----------------------------



정선군공고 제2009-755호

제1차 정선군 교통안전기본계획 공고

교통안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제1차 정선군 교통안전기본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 계획의 개요

1. 계획의 근거 : 교통안전법 제17조 제1항
2. 계획의 목표 : 교통사고 사상자 절반줄이기
3. 계획의 범위
 - 시간적 범위 : 3년(2009년 ~ 2011년)
 - 공간적범위 : 정선군 행정구역

■ 계획의 내용

1. 교통안전정책의 추진성과

- 추진근거
 - 제5차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2002년 ~ 2006년)
 - 제6차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2007년 ~ 2011년)
- 추진성과
 - 교통사고발생건수 추이

(단위 : 건/만명)

구 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연평균증가율
전 국	49.1	44.9	43.6	43.4	42.9	-3.3%
강원도	77.0	64.4	56.2	56.5	58.9	-6.5%
정선군	60.7	48.7	44.3	44.7	46.0	-6.7%

- 교통사고사망자수 추이

(명/만명)

구 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연평균증가율
전 국	1.4	1.3	1.2	1.2	1.2	-3.8%
강원도	2.5	2.2	2.0	2.0	2.1	-4.3%
정선군	2.6	2.2	3.6	3.3	4.8	16.6%

2. 교통사고 발생추이 및 원인분석

- 도로교통 부문
 - 차종별/사고유형별/법규위반별/도로종류별/시간대별 교통사고 현황조사
 - 사고누적지점 우선순위결정 및 원인조사
- 운수산업 부문
 - 업종별 교통사고 현황분석
 - 일반/특별교통안전진단 교통사고 지수 산정

3. 상위정책 및 관련계획 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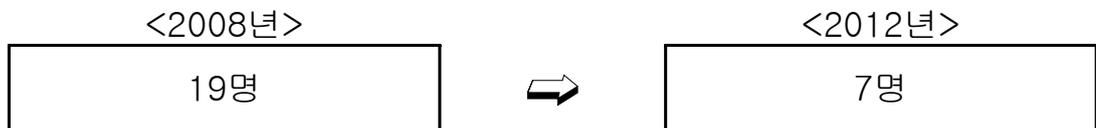
- 제6차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
 - 기간 : 2007년 ~ 2011년
 - 목표
 - 교통안전수준의 OECD 중위권(19~20위권) 진입
 - 현수준 : OECD 30개 회원국 중 25위 수준(2005년 기준)
- 교통사고 사상자 절반줄이기 종합시행계획
 - 기간 : 2007년 ~ 2011년
 - 목표
 - 5년내 교통사고 사상자를 절반으로 줄여 교통안전도를 선진국 수준까지 제고(실용정부 임기 내 OECD 상위권 (10위권) 진입)
 - 현행 제6차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보다 강화
 - 실용정부 국정과제로 선정

4. 교통사고 감소목표 설정

- 사고감소율 목표치(교통사고 사상자 절반줄이기 종합시행계획)

구 분	2008년 (1차년도)	2009년 (2차년도)	2010년 (3차년도)	2011년 (4차년도)	2012년 (5차년도)
감소율 목표치	-5%	-10%	-15%	-10%	-10%

- 정선군 감소목표치(사망자)



○ 도로관리청별 감소목표치(사망자)

도로관리청 (도로구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도로관리청 (국도)	12	10	11	10	13	13	11	8	7	5
강원도 (지방도)	0	0	1	1	2	1	1	1	1	0
정선군 (군도)	0	0	4	3	5	5	4	3	2	2
합계	12	10	16	14	20	19	16	12	10	7

5. 교통안전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부문별 계획

○ 도로교통 부문

- 사고누적지점 및 구간개선
 - 사고누적지점별, 구간별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제시
-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공간 창출
 - 보행자 횡단시설정비 및 무단횡단 방지시설물 설치
 - 보행시설 정비 및 신설
 - 도로 다이어트 및 스테거드식 횡단보도 설치방안 검토
 - 횡단보도 집중조명시설 확대 설치
 - 보행자 사망사고 원인조사 실시
 - 보행우선구역 사업추진
- 교통안전 인프라 구축
 - 교통안전점검 실시
 - 도로교통안전진단 실시
 - 신호교차로 설치
 - 어린이 보호구역 확대 추진
 - 노인보호구역 사업 추진
 -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추진
 -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추진 등
- 첨단교통정보체계 확대 구축
 - 법규위반 단속장비 확대 설치
 - 버스정보시스템(BIS) 확대 설치

○ 운수산업 부문

- 운수업체, 운전자 및 차량 안전성 확보
 - 디지털 운행기록계 장착 유도

- 운수업체 안전진단을 통한 교통사고 위험 제거
- 사고 많은 사업용 운전자에 대한 체험교육 유도
- 차량내 CCTV 확대설치 유도

6. 교통문화 선진화 계획

- 교통안전정책 추진체계 강화 계획
 - 정선군 교통안전 담당 부서 기능 및 전문성 제고
 - 지역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운영
- 교통안전 의식제고 및 지식보급 계획
 - 교통안전교육, 홍보, 캠페인 강화
 - 교통안전 평생교육 기반 마련
- 교통안전 교육 강화
 - 어린이 및 중고등학생, 운전자, 고령자에 대한 교육강화

■ 연차별 세부추진계획 및 투자계획

1. 정책 집행 우선순위 선정

사고유형	최근 5년 교통사고 현황			
	사망자수(명)	사망사고건수(건)	건수당 사망율(%)	우선순위
차대사람	20	167	11.0	2
차대차	28	676	2.0	3
차량단독	25	101	28.2	1

2. 투자계획

(단위: 백만원)

구 분	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교통안전기본 계획 투자예산	12,052	146	1,386	1,524	1,365	1,444	1,245	1,611	3,331

■ 문의사항

- 정선군 교통행정부서(033-560-2367)

정선군공고 제2009-759호

- 『정선 아리랑 특구』 지정신청에 따른 -
특구계획안·공청회 및 특화사업자 지정신청 등의 공고

2009. 11. 24.
정 선 군 수

1. 특구의 명칭 : 정선 아리랑 특구

2. 특구의 위치 : 정선군(9개읍·면 일원)

3. 특구의 면적 : 128,025,807㎡

4. 특구지정 필요성

가. 정선 아리랑은 오랜 세월동안 구전되어온 대표적인 문화유산으로 1971년 12월 강원도 무형문화재 제1호로 지정되어 우리나라 아리랑의 시원이라는 문화적 상징성을 띄는 지역의 대표 브랜드임.

나. 정선군에서는 그동안 지역의 대표축제인 정선 아리랑제를 1976년 제1회를 시작으로 총 33회 개최하였으며, 정선 5일장 운영, 아라리촌 조성, (재)정선아리랑문화재단 설립, 정선군립 아리랑예술단 창단, 정선아리랑 창극공연,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 등재 추진, 아리랑학교 운영 등 정선 아리랑에 대한 인프라를 구축하여 왔음.

다. 이를 기반으로 정선 아리랑 특구가 지정된다면 아리랑의 시원지이자 매력있는 문화거점 도시로서의 이미지를 확립할 수 있으며, 다양한 문화관광상품을 만들어 내고, 이를 지역의 관광산업과 연계시킴으로써 지역경제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임.

라. 또한, 추진하고 있는 정선 아리랑과 관련된 모든 사업들을 특구라는 큰 그릇에 담고 보여줌으로써 사업간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비전을 공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선과 정선 아리랑을 널리 알림으로써 국내외의 폭넓은 인지도와 관심을 고조시킬 것임.

5. 특화사업

가. 정선 아리랑 창조공간 조성 사업

- 정선 아리랑 전시공연센터 건립

- 정선 아리랑 테마거리 조성
- 정선 아리랑 고개(옛길) 조성
- 정선 아리랑 테마열차 트레일 확장
- 나. 정선 아리랑 브랜드 강화 사업
 - 정선 아리랑 유네스코 등재
 - 정선 아리랑제 명품 글로벌화
- 다. 정선 아리랑 특화상품 개발 사업
 - 정선 아리랑 복합문화관광상품 개발
 - 정선 아리랑 멧목 체험 프로그램 운영
 - 정선 아리랑 막걸리 클러스터 조성
 - 정선 지역특산물 상품화
- 라. 정선 아리랑 콘텐츠 발굴 사업
 - 정선 아리랑 장르 개발 및 공공·생활음향 제작 등

6. 특화사업자 : 정선군수

7.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

- 가. 아리랑 고개(옛길) 조성을 위한 국유림 임도설치 및 대부허가, 영구시설물 설치에 따른 특례적용
 - ⇒ 특례법 제27조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 ⇒ 특례법 제27조의 3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 나. 아리랑 막걸리 주조체험 프로그램을 위한 농민주 제조면허 허가에 따른 특례적용
 - ⇒ 특례법 제36조의 3 - 「주세법」에 관한 특례
- 다. 정선 지역특산물 상품화 사업을 위한 지리적표시제 등 우선심사 특례적용
 - ⇒ 특례법 36조의 5 - 「농산물품질관리법」에 관한 특례

8. 재원조달 방법

- 총 사업비 : 477억원
 - 국비 130억원, 지방비 347억원
- ※ 본 사업비는 사업규모 확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도 있음.

9. 부동산 가격의 안정방안

- 특구 지정후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필요시 시행

10. 특화사업의 사업시행 기간 : 2009년 ~ 2014년

11. 특구계획안 등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및 의견제출 장소

○ 열람방법

- 읍·면 : 총무팀
- 군 청 : 기획감사실 미래전략팀

○ 의견제출

- 우 편 : (233-804) 정선군 정선읍 봉양리 267 정선군청 기획감사실 미래전략팀(☎ 560-2131)
- Fax : (033)560-2592

12.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 2009. 11. 30 ~ 12. 13

13. 공청회 개최 공고

- 가. 목 적 : 정선 아리랑 특구계획(안)에 대한 관계 전문가 및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함.
- 나. 일 시 : 2009. 12. 08(화) 14:00
- 다. 장 소 : 정선읍사무소 대회의실
- 라. 특구계획(안) 개요 : 정선군 홈페이지 “공고/고시”란 참조

정선군공고 제2009-763호

공 고

2009년도 솔잎혹파리방제(임내정리)사업을 실행하고자 사업추진통보서를 발송하였으나 산림소유자의 소재가 불분명하여 우편물이 반송된 대상산림에 대하여 산림자원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동법 시행규칙 제25조 제2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후 우리군에서 방제사업 하고자 합니다.

- 다 음 -

1. 사 업 명 : 2009년 솔잎혹파리방제(임내정리)사업
2. 사업기간 : 2009. 11. ~ 12.
3. 사업내용 : 소나무 임지 간벌 및 하층식생정리
4. 공고기간 : 2009. 11. 25 ~ 2009. 12. 14(20일간)
5. 기타사항
 - 위 기간내에 이의가 없을 경우 솔잎혹파리방제(임내정리)사업 추진을 승낙하는 것으로 산림사업을 시행할수 있는자에게 대행하여 실행함.
 - 본 공고에 이의가있을 경우 공고기간내에 우리군 환경산림과 전화(033-560-2167) 또는 서면으로 이의 신청 바랍니다.
6. 사업대상지 내역 : 붙임 참조

붙 임 : 솔잎혹파리방제(임내정리)사업 대상지 1부.

2009. 11. 25.

정 선 군 수

2009년 솔잎혹파리방제(임내정리)사업 대상지 필지별 내역

위		치		지적(ha)	대상지 면적(ha)
읍면	리	지 번			
정선	덕송	산	86-1	0.12	0.12
정선	덕송	산	88-1	1.00	1.00
정선	덕송	산	88-2	0.28	0.28
정선	덕송	전	95	0.40	0.40
정선	덕송	산	113	1.68	1.68
정선	덕송	산	114	11.00	7.96
정선	덕송	산	141	4.09	4.09
정선	덕송	산	142	1.98	1.98
정선	덕송	산	143	0.34	0.34
정선	덕송	산	147	0.33	0.33
정선	덕송	산	147-1	0.20	0.20
정선	덕송	산	147-2	0.33	0.33
정선	덕송	산	147-3	0.33	0.33
정선	덕송	산	147-4	0.33	0.33
정선	덕송	산	147-5	0.33	0.33
정선	덕송	산	147-6	0.33	0.33
정선	덕송	산	148	1.04	1.04
정선	덕송	산	149-2	2.18	2.18
정선	덕송	산	154-1	5.00	4.51
정선	덕송	산	167-5	2.97	2.95
정선	덕송	산	167-6	1.47	1.47
정선	덕송	임	394	0.27	0.27
정선	덕송	임	395	0.35	0.35
정선	덕송	임	395-1	1.39	1.39
정선	덕송	임	525-10	0.09	0.09
정선	덕송	임	525-11	0.09	0.09
정선	덕송	임	525-12	0.09	0.09
정선	덕송	임	525-2	0.09	0.09
정선	덕송	임	525-6	0.09	0.09
정선	덕송	임	525-7	0.09	0.09
정선	덕송	임	525-8	0.10	0.10
정선	덕송	임	525-9	0.17	0.17

정선군공고 제2009-764호

정선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안 입법예고

정선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09. 11. 26.

정 선 군 수

1. 조 례 명 : 정선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안

2. 제정취지

가. 정선군 공설묘지 조성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상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장사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조례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함(안 제5조)

나. 장사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의 범위와 요건 규정(안 제7조)

다. 장사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라 할지라도 법 또는 조례를 위반할 경우 사용허가 취소 및 처리절차를 정함.(안 제8조)

라. 장사시설의 사용료 현실화 및 사용료 면제·감면대상을 정함.
(안 제9조 및 제10조)

마. 장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될 경우 위탁운영할 수 있음.(안 제14조)

바. 장사시설의 위탁 관리·운영 상황을 지도·감독할 수 있는 규정 명시(안 제16조)

사. 장사시설의 사용기간에 대하여 명백히 규정함(안 제20조 및 제25조)

아. 다른 조례의 폐지(부칙안 제2조)

4.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9년 12월 1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선군(FAX : 560-2588)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주민생활지원실(전화 : 560-297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서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붙임 : 정선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안 1부.

정선군조례 제 호

정선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정선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사시설”이란 공설묘지, 공설화장시설, 공설봉안시설을 말한다.
2. “매장”이란 시체(임신 4개월 이후에 죽은 태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유골을 땅에 묻어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
3. “화장”이란 시체나 유골을 불에 태워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
4. “연고자”란 법 제2조제16호의 정의에 의한다.
5. “분묘”란 시체 또는 유골을 매장하는 시설을 말한다.
6. “봉안당”이란 화장한 유골을 안치하기 위한 납골시설을 말한다.
7. “봉안묘”란 화장한 유골을 안치하기 위하여 설치된 분묘형태의 봉안시설을 말한다.

제3조(장사시설의 수급계획) ①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5조 및 영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사시설 수급에 관한 중·장기계획(이하 “수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장사시설 수급계획 수립 시 필요한 경우 전문연구기관에 기초자료의 수집·조사 및 분석 등을 의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2장 장사시설의 설치 및 사용

제4조(명칭 및 위치) 장사시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5조(사용허가 등) ①장사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군수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한 사항을 변경하

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사용허가 시 관내, 관외의 구분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사망자의 경우 사망일 현재 정선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은 관내로 하고, 그 외는 관외로 한다.
2. 죽은 태아의 경우 사산일 현재 산모가 정선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은 관내로 하고, 그 외는 관외로 한다.
3. 개장유골의 경우 개장 신고일 현재 기존 분묘의 소재지가 정선군일 경우 관내로 하고, 그 외는 관외로 한다.
4. 무연고 사망자 및 무연분묘의 경우 사체 발견 장소와 분묘 소재지가 정선군일 경우 관내로 하고, 그 외는 관외로 한다.

제6조(사용장소의 지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사시설의 사용 또는 변경허가를 득한 자는 군수가 정하는 장소에 따라 순차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자격) ①장사시설의 사용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다만,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자와 외국인에 대하여는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에 의하여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1. 분묘는 사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2. 봉안묘는 사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봉안묘에 대하여는 사망일(개장유골은 신청일)기준 6개월 이전부터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의 가족과 공설묘지 내 이미 매장되어 안치된 자의 가족유골 및 납골을 안치하여 사용할 수 있다.
- ③군 관내에서 발생하는 유·무연분묘의 유골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봉안묘 또는 봉안당에 안치하여 사용할 수 있다.
- ④정선 하늘터 시설 사용은 수급 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자와 외국인에 대하여도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제8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①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 군수는 그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허가를 받은 장사시설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매매하였을 때
2. 법령 또는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때
3. 사용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하였을 때
4. 사용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않거나 지정된 기한 내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5.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
6. 분묘의 구조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다른 공작물을 설치하였을 때

7. 장사시설의 신설·증설·개선 등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8. 장사시설 설치지역에 대한 재해의 예방 및 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때
 9. 기타 장사시설의 관리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때
- ②군수는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로 사용허가를 취소할 경우 미리 사용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구술 또는 서면(전자 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 ③군수는 제2항의 통지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유골을 수거하거나 개장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 제20조에 준하여 처리할 수 있다.
- ④공설묘지, 공설봉안시설의 사용권은 기존 사용 신청자에게 있으며, 신청자의 사망 시 그 연고자에게 주어지고 매매·양도·임대 등을 할 수 없다.

제9조(사용료 등) ①장사시설의 사용자는 별표 2에 의한 사용료를 납부 하여야 한다.

- ②제1항의 사용료 이외의 부대비용에 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 ③제1항의 사용료는 사용 또는 기간연장 허가 신청 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용권자가 공설봉안시설의 개인단에서 부부단으로 이동 안치할 경우에는 기 납부한 사용료를 월단위로 계산하여 잔여기간에 대한 사용료를 환불 또는 정산할 수 있다.

- ⑤사용료 납입 후 장사시설을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이를 환불한다.

제10조(사용료의 면제 및 감면 등) ①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내자의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
2.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
3.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독립유공자
4. 무연고 행여 사망자

②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50% 감면할 수 있다.

1. 관외자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독립유공자
2. 관내자로서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5.18 민주유공자

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한 사용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는 화장 후 봉안당에 안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1조(주소변경 등 신고) 장사시설의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사용자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
2. 상속으로 사용권을 승계한 경우

제12조(원상복구 및 실비변상) ①군수는 장사시설의 사용자가 장사시설안의 시설, 기물 등을 손괴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를 명하거나 필요한 실비 변상을 요구할 수 있다.

②분묘를 개장할 때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군수는 원상복구에 필요한 실비변상을 사용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개장제한) 사용허가를 받아 시체나 유골을 매장하거나 안치하여 이미 사용 중인 자는 공설묘지 내 다른 장소로 개장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분묘에서 봉안묘나 봉안당, 봉안당에서 봉안묘, 봉안묘에서 봉안당으로의 개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장 장사시설의 운영 및 지도감독

제14조(위탁운영 등) ①군수는 장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비영리 법인이나 군에서 출자한 법인 또는 정선군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관리·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수탁 받고자 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별도의 협약으로 정하며,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연장할 수 있다.

③수탁자는 위탁기간이 만료되거나 취소된 경우에는 장사시설의 관리·운영에 사용하던 모든 장부·서류와 장비·비품 및 부대시설 등은 군수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5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수탁자는 위탁운영 기간 중 위탁받은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훼손·망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2. 수탁자는 관련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준수사항과 군수의 업무상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3.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시설의 구조와 사용목적은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4. 수탁자는 협약서에 명시된 금액 외에는 징수할 수 없다. 다만, 금액의 변동요인이 발생하면 군수와 협의하여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제16조(위탁의 취소 등) ①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련법령, 이 조례 및 협약내용을 위반 하였을 경우
2. 수탁자가 관리·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장사시설의 운영과 관련한 민원 불편을 초래하여 집단 민원이 발생하였을 경우
4. 기타 공익상 위탁운영이 부적당 하다고 인정될 경우

②군수는 위탁의 취소 결정일 1월전에 수탁자에게 취소통지를 하여야 한다.

제17조(지도·감독) ①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관리·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하는 등 위탁업무의 이행여부를 지도·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장 분묘 및 봉안묘

제18조(분묘 및 봉안묘의 면적 등) ①분묘는 접속형 평분으로 군수가 지정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분묘의 면적은 단장은 6.3제곱미터, 합장은 8.1제곱미터 이내로 하며, 봉안묘는 10제곱미터 이내로 하고, 유골함 12기를 안치할 수 있다.

제19조(분묘 및 봉안묘의 구조) ①분묘의 시설물은 석조로 하며 규격은 별표3과 같다.

②봉안묘의 시설물은 석조로 하며 규격은 별표4와 같다.

③제1항과 제2항의 시설물 사용자는 그 구조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다른 공작물을 설치할 수 없다.

제20조(분묘 및 봉안묘의 사용기간) ①분묘의 사용기간은 15년으로 하되, 15년 단위

로 3회에 한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 ②봉안묘의 사용기간은 15년으로 하되, 15년 단위로 3회에 한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 ③제1항과 제2항의 사용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기간만료 1월전에 제7조에 의한 사용료를 납부함으로써 연장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 ④합장한 분묘의 사용기간은 합장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제21조(사용장소의 반환) ①분묘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정에 의하여 개장하거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묘지를 사용할 수 없을 경우 그 사용허가권을 반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 매장 전인 때에 한하여 이미 납부된 전액을 환불하며, 사용 후에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제22조(합장) ①합장을 할 분묘는 미리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②부부 중 어느 한쪽의 사망으로 인하여 합장묘지를 신청할 경우에는 사전에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 ③제1항 및 제2항의 허가를 받은 자 중 최초 매장자는 제6조제1항의 적용을 받는다.
- ④제3항에 의하여 매장된 자의 배우자는 제6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합장할 수 있다.

제23조(개장명령) ①군수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가 취소된 분묘 및 봉안묘에 대하여는 사용허가 취소일로부터 1월 이내에 개장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개장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 ③제2항에 의한 개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5장 봉안당

제24조(시설기준) 봉안당에는 연고자실과 무연고자실을 두고 유골함을 안치할 수 있는 보관시설을 설치하며, 그 시설기준은 별표5와 같다.

제25조(사용기간 등) ①봉안당의 사용기간은 15년으로 하되, 15년 단위로 3회에 한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무연고자 유골의 안치기간은 10년으로 한다.

- ②제1항의 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기간 만료 1월전까지 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 하며, 제8조제1항에 의한 사용료를 납부함으로써 연장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사용기간이 경과된 무연유골은 영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설묘지 내 일정 장소에 집단으로 매장하여야 한다.

④봉안당 사용장소의 반환은 제2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6조(무연고 유골의 처리 등) 공익 또는 공공의 목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군지역의 사업장에서 발굴되는 무연분묘의 유골은 무연고자실에 안치할 수 있으며, 군수가 시행하는 사업장에서 발굴되는 무연유골은 지역에 관계없이 안치할 수 있다.

제2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다음 각 호의 조례는 폐지한다.

- 1. 「정선군 화장장 설치조례」
- 2. 「정선군 납골당 설치조례」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허가·설치 및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4조(위탁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탁 운영 중인 장사시설은 이 조례에 따라 위탁된 것으로 본다.

제5조(정선군 납골당 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 「정선군 납골당 설치조례」에 따라 정선군 납골당에 안치중인 유골의 사용료 및 보관 등에 관한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납골당 사용기간의 연장에 관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별표 1

장사시설의 명칭 및 위치(제4조 관련)

종류	명칭	소재지	비고
공설묘지	정선 하늘공원	정선군 여량면 남곡리 산27번지	
공설봉안시설	하늘원	정선군 여량면 남곡리 산27번지	
공설화장시설	정선 하늘터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247번지	

별표 2

장사시설의 사용료(제9조 관련)

(단위 : 원)

구 분	기 준		사 용 료		연장 사용료
			정선군민	기타 지역주민	
공설묘지 (정선 하늘공원)	매장분묘	단장(6.3㎡)	923,000	-	300,000
		합장(8.1㎡)	1,200,000	-	390,000
	봉안묘(12기 : 10㎡)		1,476,000	-	480,000
공설봉안시설 (하늘원)	유연유골 (15년)	개인단	300,000	1,000,000	300,000
		부부단	500,000	1,500,000	500,000
	무연유골(10년)		150,000	300,000	-
공설화장시설 (정선 하늘터)	대인(만15세이상)1구당		100,000	500,000	
	소인(만15세미만)1구당		80,000	300,000	
	죽은 태아 1구당		50,000	200,000	
	개장유골 1구당		80,000	300,000	

별표 5

봉안당 시설기준(제24조 관련)

시설명	시설기준
봉안안치단	봉안안치단은 가로 30센티미터, 세로 30센티미터, 높이 30센티미터로 설치한다.
유 골 함	유골함은 가로 20센티미터, 세로 20센티미터, 높이 20센티미터로 내구성이 강한 것으로 한다.
위 패	<p>①봉안안치단의 위패는 가로 5센티미터, 세로 10센티미터 이내로 일련번호와 사망자 성명을 기록 부착한다.</p> <p>②유골함의 위패는 가로 4센티미터, 세로 10센티미터 이내로 일련번호와 사망자 성명을 기록 부착한다.</p>

정선군공고 제2009-770호

정선군 소하천구역, 예정지구역 등 지형도면고시(안) 공람공고

토지이용규제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소하천구역, 예정지 등에 대한 지형도면 고시가 의무화 되어 정선군 소하천구역, 예정지 구역등의 지형도면고시(안)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용도지역 지정·고시전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 하오니 공람 공고한 사항중 의견이 있으시면 공람기간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 11. 30.

정 선 군 수

1. 공람목적 : 소하천구역, 예정지구역 등의 지형도면고시안에 대한 주민의견 청취
2. 공고내용
 - 가. 소하천구역 : 정선군 관내 177개소, 479.2km
 - 나. 위 치 : 정선군 관내 일원
 - 다. 소하천 지형도면 고시내역 : “붙 임”
 - 라. 소하천 지형도면 고시안 : “따로붙임”
 - 마. 소하천구역 결정조서 : “따로붙임”
3. 관련도서 비치 및 열람장소 : 정선군 재난안전관리과
4. 공람기간 : 게재일로부터 14일간
5. 의견제출 방법 및 장소 : 공람 기간내 정선군 재난안전관리과에 서면제출
6.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정선군 재난안전관리과(☎560-2492, 2493)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소하천 지형도면 고시 내역

행정구역	소하천명	분류번호	구 간		연장(km)	비고
			시 점	종 점		
총 계			177개 소하천		479.92	
정선읍	소 계		23개 소하천		70.74	
	생탄천	11-12-001	봉양6리 576	봉양6리 101	3.70	
	병방천	11-12-002	북실2리 280	북실2리 523	2.52	
	기우천	11-12-003	북실2리 121	북실2리 761	4.20	
	석교천	11-12-004	덕송1리 163	덕송1리 582	2.60	
	오반천	11-12-005	애산3리 17-1	애산1리 551	4.70	
	신치천	11-12-006	신월2리 494	신월2리 383-3	3.10	
	월석천	11-12-007	신월2리 56-1	신월2리 393-2	1.60	
	어치천	11-12-008	신월2리 143-1	신월2리 2	1.07	
	거어리천	11-12-009	덕우리 683	덕우리 526-2	2.50	
	여탄천	11-12-010	여탄리 1	여탄리 521	6.55	
	화작천	11-12-011	여탄리 121	여탄리 248	1.40	
	월평천	11-12-012	회동리 218-1	회동리 41	1.45	
	행마천	11-12-013	용탄리 1463-3	용탄3리 693-2	5.20	
	실론천	11-12-014	용탄1리 94	용탄1리 395	1.15	
	비룡동천	11-12-015	용탄2리 173-2	용탄2리 757-2	5.45	
	가는천	11-12-016	용탄2리 269	용탄2리 348	2.50	
	상평천	11-12-017	광하2리 1284	광하2리 52-1	5.90	
	소탄천	11-12-018	광하2리 1329	광하1리 954-1	3.10	
	여곡천	11-12-019	광하2리 1141	광하1리 779	2.40	
	망하천	11-12-020	광하2리 841-2	광하1리 536-3	2.00	
	의암천	11-12-021	굴암리 73	굴암리 169-1	4.30	
	만지천	11-12-022	굴암리 579	굴암리 73	1.65	
굴하천	11-12-023	굴암리 160	굴암리 93-1	1.70		
고한읍	소 계		8개 소하천		15.81	
	고토천	11-12-025	고한14리248-1	고한14리273	4.15	
	골말천	11-12-026	고한14리산173	고한14리273	0.90	
	정암천	11-12-027	고한1리산214-36	고한5리274-4	3.39	

행정구역	소하천명	분류번호	구 간		연장(km)	비고
			시 점	종 점		
고한읍	두문천	11-12-028	고한2리326	고한5리274-4	4.40	
	목골천	11-12-029	고한15리산213-1	고한15리산216-14	0.45	
	골안천	11-12-030	고한2리산2-1	고한2리산177-2	0.53	
	소두문천	11-12-031	고한3리272	고한2리산177-28	1.35	
	당목천	11-12-034	고한9리산2-1	고한9리산260-3	0.64	
사북읍	소 계		9개 소하천		21.58	
	노른천	11-12-024	사북1리 104-3	사북1리 211	2.75	
	북일천	11-12-033	사북1리 18	사북1리 306-6	5.90	
	호직천	11-12-036	직전리 1	동면 호촌리180-4	4.75	
	피네골천	11-12-037	직전리	직전리	0.60	
	도직천	11-12-038	직전리290-6	사북4리산282-1	4.58	
	배래치천	11-12-039	직전리610	직전리547-1	1.00	
	서부량천	11-12-040	직전리456	직전리376	1.50	
	햇골천	11-12-042	사북12리342-1	사북12리452	0.50	
신동읍	소 계		27개 소하천		75.80	
	매화천	11-12-043	방제1리350-4	방제1리452	6.60	
	속갱이천	11-12-044	방제1리산20	방제1리236-1	1.70	
	둔박골천	11-12-045	방제1리306-2	방제1리257	1.60	
	미륵천	11-12-046	방제1리산87-144	방제1리214-1	2.50	
	단곡천	11-12-047	방제2리산87-144	방제2리1-8	3.60	
	새비재천	11-12-048	방제4리443-71	방제4리산87-146	1.50	
	방제천	11-12-049	방제4리434-17	방제1리산87-106	2.38	
	구룡동천	11-12-050	방제4리산56-1	방제4리282-15	0.90	
	세골천	11-12-051	조동8리115	방제1리산4-1	2.56	
	활터천	11-12-052	조동7리산16-7	조동7리223-1	0.80	
	길운천	11-12-053	예미3리산77	조동13리268	3.10	
	절골천	11-12-056	조동1리산70-12	조동1리산63-18	2.28	
	내곡천	11-12-058	천포리산31	천포리498	1.35	
	곡길천	11-12-059	천포리산45	천포리498-2	2.40	
두리골천	11-12-060	가사리산70	가사리360-4	4.00		

행정구역	소하천명	분류번호	구 간		연장(km)	비고
			시 점	종 점		
신동읍	마차재천	11-12-061	가사리134	가사리223	2.40	
	원가사천	11-12-062	가사리산14	가사리396-11	2.10	
	의림천	11-12-063	가사리산11	가사리698	6.50	
	유문동천	11-12-065	예미2리산36	예미1리392-35	3.10	
	원덕천	11-12-066	덕천리224	덕천리314	3.00	
	고성천	11-12-067	고성1리1030	덕천리97-2	6.90	
	병산천	11-12-068	고성2리산283	고성2리697-3	0.80	
	신진천	11-12-069	고성2리278	고성2리401	0.93	
	고림천	11-12-070	고성1리90	고성1리136	1.20	
	미구천	11-12-071	고성1리569	고성1리455	1.20	
	설운천	11-12-072	운치13리399	운치3리1131	4.00	
	기곡천	11-12-073	운치1리490	운치1리1130	6.40	
	소 계		30개 소하천		69.32	
화암면	구슬동천	11-12-054	건천리 571-18	건천리 346-3	4.40	
	화표동천	11-12-055	화암리 111-4	화암리 329-2	2.85	
	절골천	11-12-057	화암리 2-2	화암리 15	1.65	
	제동천	11-12-064	물운리 731	물운리 258-1	3.15	
	좌사천	11-12-074	화암리 583	화암리 827-2	1.80	
	수류골천	11-12-075	방제1리 산20	방제1리 236-1	2.50	
	베지름천	11-12-076	방제1리 306-2	방제1리 257	0.88	
	덕산기천	11-12-077	북동리 563	덕우리 305	13.65	
	재미골천	11-12-078	북동리 산1	북동리 388	1.90	
	석곡천	11-12-079	북동리 557	북동리 561	0.50	
	월애천	11-12-080	북동리 326	북동리 403	7.25	
	후곡천	11-12-081	북동리 215	북동리 261-1	0.50	
	무널천	11-12-082	북동리 88	북동리 54	0.90	
	하들목천	11-12-083	석곡 2리 1270	석곡 2리 산146-1	0.60	
	보리산천	11-12-084	석곡 2리 1125	석곡 2리 1187-1	1.00	
	속섬천	11-12-085	석곡 2리 850	석곡2리 827-7	0.50	
후평천	11-12-086	화암 3리 320	화암 3리 285	0.50		

행정구역	소하천명	분류번호	구 간		연장(km)	비고
			시 점	종 점		
화암면	양지말천	11-12-087	화암 3리 726	화암 3리 794-3	0.50	
	심우골천	11-12-088	화암 3리 654	화암 3리 1306	1.00	
	오산천	11-12-089	화암 3리 1029	화암 3리 903-1	0.95	
	건천천	11-12-090	건천리 5	몰운리 208	7.00	
	송이골천	11-12-091	건천리 152	건천리 198-5	0.80	
	소일천	11-12-092	건천리 280	건천리 408	1.50	
	서원기천	11-12-093	백전리 597	백전리 산235	2.39	
	늪동천	11-12-094	백전 1리 381	백전 1리 383-1	0.55	
	노목천	11-12-095	백전리 246	백전리 308-2	2.50	
	마당목천	11-12-096	백전리 85	백전리 170	3.40	
	공기재천	11-12-097	백전 2리 157	백전 2리 150-2	0.60	
	장항천	11-12-098	백전 2리 44-2	백전 2리 85	2.60	
	느서목골천	11-12-099	백전 2리 19	백전 2리 6-2	1.00	
	소 계		25개 소하천		52.98	
남 면	척산천	11-12-100	무릉 3리 696	무릉 4리 423-5	2.13	
	금곡기천	11-12-101	무릉 2리 27	무릉 2리 788-1	6.12	
	쇠골천	11-12-102	무릉 2리 70	무릉 2리 120-5	0.50	
	싸리재천	11-12-103	무릉 2리 13	무릉 2리 293-1	1.30	
	덕만천	11-12-104	무릉 2리 320	무릉 2리 819-8	1.14	
	자고치천	11-12-105	무릉 2리 357	무릉 2리 362	0.65	
	자미원천	11-12-106	문곡 3리 산130	문곡 3리 137-2	4.38	
	웃자미원천	11-12-107	문곡 3리 산135	문곡 3리 산130	0.60	
	마차천	11-12-108	문곡 2리 557-4	문곡 2리 590	6.56	
	곰골천	11-12-109	문곡 2리 산243	문곡 2리 507-3	1.20	
	상시골천	11-12-110	문곡 2리 산228	문곡 2리 454	1.00	
	점촌천	11-12-111	문곡 2리 388	문곡 2리 592	1.00	
	소마평천	11-12-112	문곡 3리 산356	문곡 3리 산374-4	1.10	
	거칠현천	11-12-113	낙동 1리 8	낙동 1리 28-3	1.80	
	서운재천	11-12-114	낙동 1리 61	낙동 1리 60-3	1.00	
이용골천	11-12-115	낙동 1리 248	낙동 1리 336-6	1.00		

행정구역	소하천명	분류번호	구 간		연장(km)	비고
			시 점	종 점		
남 면	삼내천	11-12-116	유평 2리 199	유평 1리 434-3	2.20	
	고병골천	11-12-117	문곡 3리 81	문곡 3리 382-2	3.40	
	남창천	11-12-118	낙동 1리 285	낙동 1리 386-6	1.10	
	괌들천	11-12-119	낙동 2리 산49-1	낙동 2리 410-3	0.90	
	채운천	11-12-120	광덕 1리 232	광덕 1리 483-1	5.60	
	뒗내천	11-12-121	낙동 2리 산295	낙동 2리 580-1	1.00	
	송오리천	11-12-122	광덕 2리 776	광덕 2리 1183-13	1.00	
	갈금천	11-12-123	광덕 2리 산323	광덕 2리 1182	2.00	
	광탄천	11-12-124	광덕 2리 산323	광덕 2리 50-1	4.30	
여 량 면	소 계		11개 소하천		33.59	
	자개천	11-12-125	구절 1리 산32	구절 1리 378-2	2.60	
	중동천	11-12-126	구절 3리 산1	구절 3리 146	0.85	
	사자목천	11-12-127	구절 2리 72	구절 1리 288-1	4.10	
	고비덕천	11-12-128	구절 1리 산224	구절 1리 290-4	0.64	
	되골천	11-12-129	유천 2리 산7	유천 2리 261	2.00	
	남곡천	11-12-130	남곡리 158-2	남곡리 106	6.75	
	적목천	11-12-131	봉정리 282	봉정리 349-4	2.25	
	고양천	11-12-132	고양리 230-11	여량 1리 673-4	6.15	
	고창골천	11-12-133	고양리 59	고양리 229	3.50	
	큰골천	11-12-134	고양리 102	고양리 226-2	3.20	
	스므골천	11-12-135	고양리 489-2	고양리 504	1.55	
북 평 면	소 계		17개 소하천		43.20	
	하남천	11-12-136	장열 2리 산55-1	장열 2리 598-6	0.73	
	한골천	11-12-137	북평 5리 산1	북평 5리 34-1	9.25	
	장열천	11-12-138	장열 1리 산97	장열 1리 283-3	1.19	
	한대골천	11-12-139	남평리 산106	남평리 587-3	1.75	
	북적골천	11-12-140	남평리 105-1	남평리 607-9	2.04	
	새미골천	11-12-141	남평리 553-1	남평리 1184-7	2.47	
	용소천	11-12-142	북평 5리 산1	북평 5리 398-5	1.00	
	아창천	11-12-143	북평 5리 산168	북평 5리 307-1	1.00	

행정구역	소하천명	분류번호	구 간		연장(km)	비고
			시 점	종 점		
북 평 면	백운천	11-12-144	문곡리 203	문곡리 305	2.55	
	스므골천	11-12-145	문곡리 149	문곡리 253	1.85	
	벗밭천	11-12-146	숙암리 산1	숙암리 439	3.55	
	오재미천	11-12-147	숙암리 산400	숙암리 497	0.55	
	단임천	11-12-148	숙암리 289	숙암리 산1	6.33	
	우동골천	11-12-149	숙암리 산62	숙암리 271	1.00	
	장재천	11-12-150	숙암리 204	숙암리 289	2.50	
	안단임천	11-12-151	숙암리 산1	숙암리 289	3.30	
	어도원천	11-12-152	나전 1리 산99	나전 1리 429-3	2.15	
임계면	소 계		28개 소하천		96.90	
	가목천	11-12-153	가목리 73	임계 1리 산8-22	5.00	
	직원천	11-12-154	직원 2리 산1-1	직원 2리 404	4.20	
	명주목천	11-12-155	직원 2리 6	직원 1리 71-1	3.20	
	도전천	11-12-156	임계 2리 58	도전 1리 산1-1	6.40	
	금방동천	11-12-157	임계 3리 산8	임계 2리 814	7.30	
	큰골천	11-12-158	임계 4리 산604	임계 3리 366-3	8.20	
	용구장천	11-12-159	봉산 1리 579	송계 8리 571	1.70	
	장찬골천	11-12-160	송계 5리 산166-1	봉산 2리 310-1	5.40	
	뒷골천	11-12-161	낙천 1리 산63	낙천 1리 126-2	2.50	
	소두천	11-12-162	낙천 2리 660	낙천 2리 산153-1	2.90	
	오곡천	11-12-163	낙천 1리 산17	낙천 3리 산17	1.60	
	월탄천	11-12-164	용산 1리 산18	용산 1리 202-2	1.10	
	햇골천	11-12-165	용산 2리 산1	용산 2리 산204-2	2.20	
	석산천	11-12-166	용산 2리 산140	용산 2리 산174-2	1.20	
	용동천	11-12-167	용산 2리 산276	용산 2리 531-5	0.90	
	석둔천	11-12-168	골지 1리 산180	골지 1리 산176-1	1.00	
	월루천	11-12-169	반천 2리 산8	반천 1리 산77-1	1.50	
	슬안천	11-12-170	송계 2리 39	봉산 3리 산169-1	5.80	
	큰너근령천	11-12-171	송계 1리 산186-6	송계 2리 919-5	1.60	
너근령천	11-12-172	송계 2리 산150-1	송계 2리 881-2	1.60		

행정구역	소하천명	분류번호	구 간		연장(km)	비고
			시 점	종 점		
임계면	고양천	11-12-173	공양리 산171	반천 1리 601-1	11.50	
	소래천	11-12-174	덕암리 산52	덕암리 137	2.90	
	등골천	11-12-175	덕암리 산50-1	덕암리 118	2.20	
	무널골천	11-12-176	덕암리 산50-1	덕암리 237	2.80	
	삼배일천	11-12-177	덕암리 289	덕암리 249	1.70	
	장강천	11-12-178	덕암리 293	덕암리 339-2	2.70	
	위밀천	11-12-179	덕암리 357-2	덕암리 374-2	1.10	
	덕암천	11-12-180	덕암리 394	덕암리 3	6.70	

**정선군 소하천구역 등의 지형도면고시(안) 공람·열람공고
열람자 의견서**

공 랑 건 명	정선군 소하천구역, 예정지구역 등의 지형도면고시(안)		접수번호	
			접 수 일	2009. . .
공 랑 인 인 적 사 항	주 소			
	성 명			
	연 락 처			
토 지 소 재 지	위 치			
	면 적			
	기 타 사 항			
공 랑 의 건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열람공고한 정선군 소하천구역, 예정지구역 등의 지형도면고시안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09년 월 일

신청인 (인)

정 선 군 수 귀 하